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5.12 (화) 10:00

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권광택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5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12일

3. 제안 이유

- 복잡·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고 이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도민들이 지식재산을 창출,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과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,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
- 나.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지식재산의 인식 향상과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명시(안 제5조)
- 라.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강화 시책 강구 및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의 실시(안 제7조)
- 바. 진흥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사. 권리침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(안 제9조)
- 아. 지식재산의 진흥과 시행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 규정(안 제10조)
- 자. 위원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보호 의무 규정 명기(안 제13조)
- 차.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사무 위임 사항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'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급변함으로써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과 이에 수반하여 관련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·육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- 다만,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 운용방향 등에 관해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